

의안번호	2218974
의 퇴 인	박지혜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2579
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운영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9,120만원 등 5년간 2억 2,000만원(연평균 4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반환공여구역 위원회 운영 (안 제7조)	7.2	7.2	7.2	7.2	7.2	36	7.2
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(안 제9조)	184	-	-	-	-	184	36.8
합계	191.2	7.2	7.2	7.2	7.2	220	44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반환공여 구역개발청의 설치 등)	-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등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둠 -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반환공여 구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-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·관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둠 -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3	안 제8조(반환공여 구역 개발사업 추진지원단 설치 등)	-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함	의무규정
4	안 제9조(반환공여 구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-개발청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
5	안 제19조(손실보상)	-반환공여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·사용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, 사업시행자·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개발청장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반환공여구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0조(기반시설의 설치 등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, 공항, 철도, 항만, 상·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	의무규정
7	안 제31조(특별회계의 설치)	-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함	재량규정
8	안 제33조(부담금 등의 감면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기반시설 설치비용, 하천 점용료·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34조(보조금 교부 등)	-국가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반환공여구역개발청의 설치 등)	×	○ 조직 및 인력계획,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현시점에 합리적인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- [참고자료] 새만금개발청 신설 시 예산 및 인력 현황

2	안 제7조(반환공여구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○	
3	안 제8조(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지원단 설치 등)	×	○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, 현 시점에서 지원단 조직, 인력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현시점에 합리적인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9조(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
5	안 제19조(손실보상)	×	○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되고, 이 과정에서 토지·물건 등의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며, 구체적인 보상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되므로, 손실보상에 따른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는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20조(기반시설의 설치 등)	×	○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인 ‘해당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, 공항,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’의 내용 및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, 이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
7	안 제31조(특별회계의 설치)	×	○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대상,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8	안 제33조(부담금 등의 감면)		
9	안 제34조(보조금 교부 등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반환공여구역 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
- 안 제7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위원회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를 15명, 이 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 수를 6명으로 가정¹⁾하고, 위원회는 연간 4회 개최, 회당 30만원²⁾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

1) 개정안 제7조제5항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하도록 규정함

- 회당 지급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
- 안 제9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반환공여구역 위원회 운영(안 제7조)

- (회의참석수당) 추계의 전제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위원회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20만원 등 5년간 총 3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	7.2	7.2	7.2	7.2	7.2	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(안 제9조)

- 안 제9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8,4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 -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정안전부의 최근 5건의 연구용역은,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

2) 기획예산처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내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으로, 5건 연구용역 예산의 평균 금액은 1억 6,300만원임

- 해당 평균 금액을 2023년도 비용으로 보고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, 2028년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1억 8,400만원임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8년에 비용이 발생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	184	-	-	-	-	18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운영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9,120만원 등 5년간 2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반환공여구역 위원회 운영(안 제7조)	7.2	7.2	7.2	7.2	7.2	36
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(안 제9조)	184	-	-	-	-	184
합계	191.2	7.2	7.2	7.2	7.2	2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새만금개발청 예산 및 인력 현황(안 제6조 반환공여구역개발청 관련)

(자료: 새만금건설청 제출자료 및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)

□ 새만금개발청 개청 초기 예산 현황

- '13년 개청 당시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배정된 예비비 70억 원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배정됨
 - 개청일자가 9월임을 감안하여, 예산 규모를 4개월분으로 배정
 - 부지매입비, 건축비 등 청의 설치에 관한 비용은 새만금개발청 예산으로 편성·집행한 바 없음

[2013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]

(단위: 억원)

분야	사업명	예산액
계		70
청 설치 비용		-
운영비	기본경비	16
	행정정보망 구축	28
	소계	44
사업비	투자유치지원	8
인건비		18

자료: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

□ 2014년도 예산 편성 현황

- 2014년도 예산(안)은 '13.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, 확정('14.1월)
 - 동서도로 건설 사업*은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이관
 - ('14)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비(45), 기본조사설계비(6)를 포함, 총 51억원

[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]

(단위: 억원)

분야	사업명	예산액
계		192
■청 설치 비용		—
■운영비	기본경비	27
	행정능률향상	1
	새만금위원회 운영	1
	소계	29
■사업비	동서도로 건설	51
	투자유치지원	25
	정책연구	8
	소계	85
■인건비		78

□ 2015년도 예산 편성 현황

- 2015년부터 「국가재정법」 상 예산 편성 체계*에 따라 예산 확보
- * (부처) 예산(안) 요구(~5.31) → (기획재정부) 편성(~9.2.) → (국회) 심의·확정(~12.2.)
 - 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*(국토부), ②국제관광단지 개발** (문체부) 사업 추가 이관(이후 개청 관련 재정사업 이관은 없음)
 - * (기간) '13~'18/(총사업비) 239억원/ (규모) 배수지 1개소(32천톤), 관로(4km)/ (내용) 오식도배수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연결관로 구축/ (방식) 보조(국비 100%)
 - ** (기간) '13~계속/ (내용)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, 생태공원 3개소(군산2, 김제1) 조성/ (방식) 보조(국비 50%)

[201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]

(단위: 억원)

분야	사업명	예산액
계		681
청 설치 비용		-
운영비	기본경비	29
	행정능률향상	1
	행정정보망 구축	4
	새만금위원회 운영	1
	소계	35
사업비	동서도로 건설	430
	재난안전 네트워크 체계 구축	2
	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	40
	국제관광단지 개발	16
	국가별 경험특구 기반조성	50
	투자유치지원	19
	새만금 사업 홍보	2
	정책연구	8
	소계	567
인건비		79

[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]

(단위: 억원)

분야	사업명	예산액
계		2,028
■운영비	기본경비	48
	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	9
	새만금투자유치지원	24
	새만금개발정책연구	9
	행정정보망 구축	11
	소계	100
■사업비	새만금 상수도시설건설사업	34
	새만금 종합사업 관리 기술지원	15
	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	1,630
	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	54
	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	17
	새만금 입주기업 지원	5
	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	44
	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관리	1
	소계	1,800
■인건비		127

□ 새만금개발청 정원 : 138명

(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 기준 작성)

합계	정무	고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138	1	4	3	20	44	44	19	1	2